



# 은퇴 후 주어지는 8만 시간! 긴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8만 시간(수면, 식사시간 등을 빼고 남는 시간: 1시간 X 365일 X 20년)

인생 100세 시대, 노후설계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보다 은퇴 후 노후생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 요즘!  
은퇴 후 시작되는 두 번째 인생은 삼성화재 '아름다운 생활 II'와 함께 준비하세요.



  
(부부기준)  
월평균  
노후생활자금

## 184 만원

  
연 최고

## 48 만원 까지 세액공제

### 연단위 복리, 유배당 혜택으로 수익성 보장

삼성화재 '아름다운 생활 II'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단위 복리와, 수익이 날 땐 배당(운용수익 발생 시)으로 챙겨주니까 긴 노후생활이 여유롭고 든든합니다.

###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2015년, 노후준비 종합진단 받은 1만 2,429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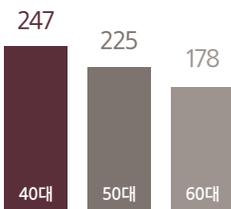
※ 매월 부부 기준 생활비

출처: 국민연금공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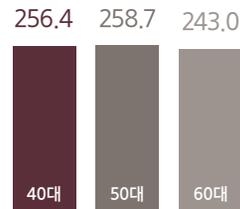
 남성응답  
227만 9천원

 여성응답  
211만원

예상 필요노후생활비 (단위: 만원)



노후준비 점수 (400점 만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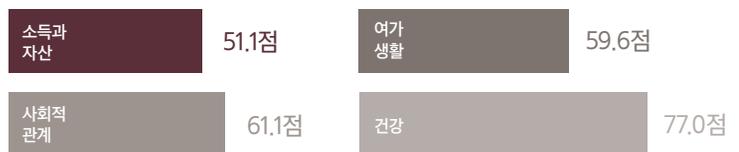
###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직장인은 물론 전문직, 자영업자까지 보장기간 동안 연 최고 4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48만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6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향후 세제 관련 법규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분야별 노후준비 점수 (100점 만점)



02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왜,  
'아름다운  
생활 II' 보험이  
필요하죠?

## 납입기간에는 수익성과 절세혜택으로, 만기 후엔 생활자금으로 긴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켜드립니다

###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시간의 마법 '연단위 복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단위 복리로 더 든든한 '아름다운 생활 II'는 본격적인 100세 시대, 저금리와 높은 물가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부리됨



### 세액공제로 누리는 알찬 절세효과

직장인은 물론 전문직, 자영업자까지 납입기간 동안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노후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까지 적용됩니다.

\* 향후 세제 관련 법규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로 수익성과 원금보장을 동시에

'아름다운생활 II'는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공시이율과 만기시 원금보장이 되는 최저보증이율을 운영합니다.

\* 공시이율(17.3월 현재 연단위 복리 2.3%)

\*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5년 이하 1.25%, 5년 초과 10년 이하 1.0%, 10년 초과 0.5%)



보험가입 시  
가입대상과  
연금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죠?

가입대상	0세 ~ 최대(연금지급개시 - 5세)까지 국내거주자 ※ 최고 가입연령 75세
연금지급개시 나이	만 55세~80세
납입주기	월납(150만원 한도), 3개월(450만원 한도), 6개월(900만원 한도), 연납(1,800만원 한도)

납입기간	5년납 / 7년납 / 10년납 / 12년납 / 15년납 / 20년납 / 전기납
연금지급형태	균등설계형
연금지급기간	최소 5년~25년

※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만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상
만 50세 이후	가입 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10~25년	9~25년	8~25년	7~25년	6~25년	5~25년

###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연금액
균등설계형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연금액은 이 상품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와  
사정상 납입이  
어려울때  
어떻게  
하죠?

### 보험료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또는 매년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 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 가. 기본보험료

기본계약 기본보험료는 아래의 한도로 하며,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영 합니다.

구분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최저한도	5만원	15만원	30만원	60만원
최고한도	150만원	450만원	900만원	1,800만원

#### 나. 추가납입보험료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한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모든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계약자는 보험계약일 3년 후부터 최대 3회 이내, 1회 신청당 12개월 한도로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에는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유예기간 중의 유지관련비용)이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부활(효력회복) 간소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된 경우 1회 보험료 납입만으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부활(효력회복) 시에는 연체·실효기간 동안의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연체·실효기간의 유지관련비용)을 일시에 적립금에서 차감하며, 해당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1회 보험료에 부족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부활(효력회복) 간소화 신청 시 납입유예기간 또는 연체·실효기간만큼 보험료 납입일이 연장되며,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또한,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한 저축성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및 부활(효력회복) 간소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세제와  
관련해  
알아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죠?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기본계약	순수연금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한 계약 소멸 시에는 책임준비금 지급

※ 적립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 세제관련 사항 안내

### 세액공제한도 및 불입한도

불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소득금액의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70세 미만이면 5.5%, 70세~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 부과(중도해지 및 연금 일시수령)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외수령 시에는 국세청에 의하여 징수되는 기타소득과세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인출제도

연금개시 이후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연금계좌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 등을 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향후 세제관련 법규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액연금, 가산연금이란?

유배당 연금지출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것은 "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입니다.

증액연금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가산연금	연금지급일부터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05

## 가입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의 봄

삼성화재의 브랜드 심볼인 '당신의 봄'은 고객을 제대로, 꼼꼼히, 앞서 보겠다는 '봄(Seeing)'의 자세와 세상의 불안함에 맞서 보다 희망찬 고객의 '봄(Spring)'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전화  
대표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5114**

고객님께

드림

연락처

\* 궁금하신 사항은 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제작: 준법감시팀(장기상품개발2파트, 제17-019호, '17.3.23)

